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철도)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 - 5호선 둔촌동역 -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550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 출 일 : 2023년 2월 6일
- 라. 회 부 일 : 2023년 2월 9일

### 2. 안건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철도:본선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		연 장 (m)	면 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점	종 점	주 요 경과지				
기정	철도	도시철도 5호선 (길동~마천)	강동구 길동 379일대	송파구 마천동 226일대	-	7,500	-	1991.04.01. (건고 제151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기구 2개소 이설 (증 334㎡)</li> <li>• 도로, 공공공지, 문화 및 복지시설 중복결정</li> </ul>
변경	철도	도시철도 5호선 (길동~마천)	강동구 길동 379일대	송파구 마천동 226일대	-	7,500	-		

○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철도	도시철도 5호선 (둔촌동정거장)	강동구 둔촌동 416일대	5,846	증) 393	6,239	1991.04.01. (건고 제151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번,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3개소 이설 (증 393㎡)</li> <li>• 도로, 공공공지, 공원 중복결정</li> </ul>

○ 도시계획시설(철도:부대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폐지	철도	도시철도 5호선 (환기구)	강동구 둔촌동 170-1앞	475	감) 475	-	1993.07.31 (서고제226호)	• 환기구(2개소) 이설에 따른 시설 폐지 (감 638㎡)
폐지	철도	도시철도 5호선 (환기구)	강동구 둔촌동 170-1앞	163	감) 163	-		

○ 변경사유서

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철 도 (본 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기구(2개소) 본선 편입 및 이설: 증 334㎡</li> <li>①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: 감 58㎡</li> <li>② 환기구 이설: 증 141㎡</li> <li>③ 환기구 본선 편입: 증 251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양재대로 차선 확장을 위해 기존 보도에 설치된 1번,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5개소 이설</li> </ul>
철 도 (정 거 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번, 2번 출입구 및 환기구(3개소) 이설: 증 393㎡</li> <li>①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: 감 156㎡</li> <li>②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: 증 549㎡</li> <li>※ 전체면적 대비 23.3% 변경</li> </ul>	
철 도 (부대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기구(2개소) 폐지: 감 638㎡</li> </ul>	

### 3. 입안사유

-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로(양재대로) 확장으로 5호선 둔촌동역 출입구 이설(1,2번), 환기구 5개소 이설(본선2개, 정거장3개) 및 폐지(2개소)하고,
- 둔촌동역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(철도)결정선 현행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

### 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용 도 지 역: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
- 기 타: 도로, 철도, 공공공지

## 5. 도시관리계획(안) 의견청취

[열람공고]

- 의견청취기간 : 2022. 7. 14. ~ 2022. 7. 28.
-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, 강동구 도시계획과

[재열람공고]

- 의견청취기간 : 2022. 10. 20. ~ 2022. 11. 3.
- 게재신문 : 문화일보, 내일신문
-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, 강동구 도시계획과

## 6. 강동구의회 의견청취

- 일시 : 2022. 12. 2.
- 결과 : 원안가결

## 7.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- 일시 : 2022. 12. 19.
- 결과 : 원안동의

## 8. 환경성 검토

-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(양재대로)상 지하철 출입구(1, 2번) 및 환기구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지형변동이 미미한 여건이며, 공사 시 주변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조치 시행하겠음

## 9. 기타

### ○ 재원조달계획

- 자금조달계획 :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(사업시행자) 자체조달
- 총 사업비 : 15,650백만원
- 연차별 투자계획 (백만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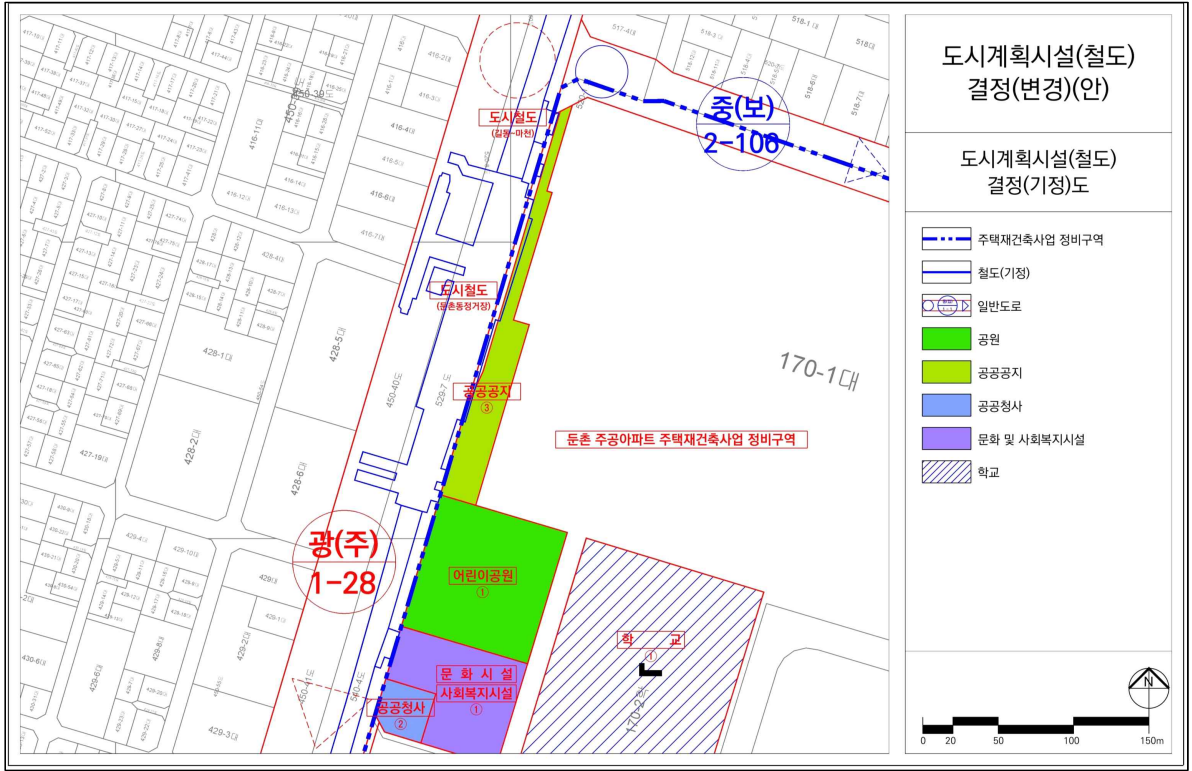
구 분	합 계	2023년	2024년
사 업 비	15,650	7,825	7,825

### ○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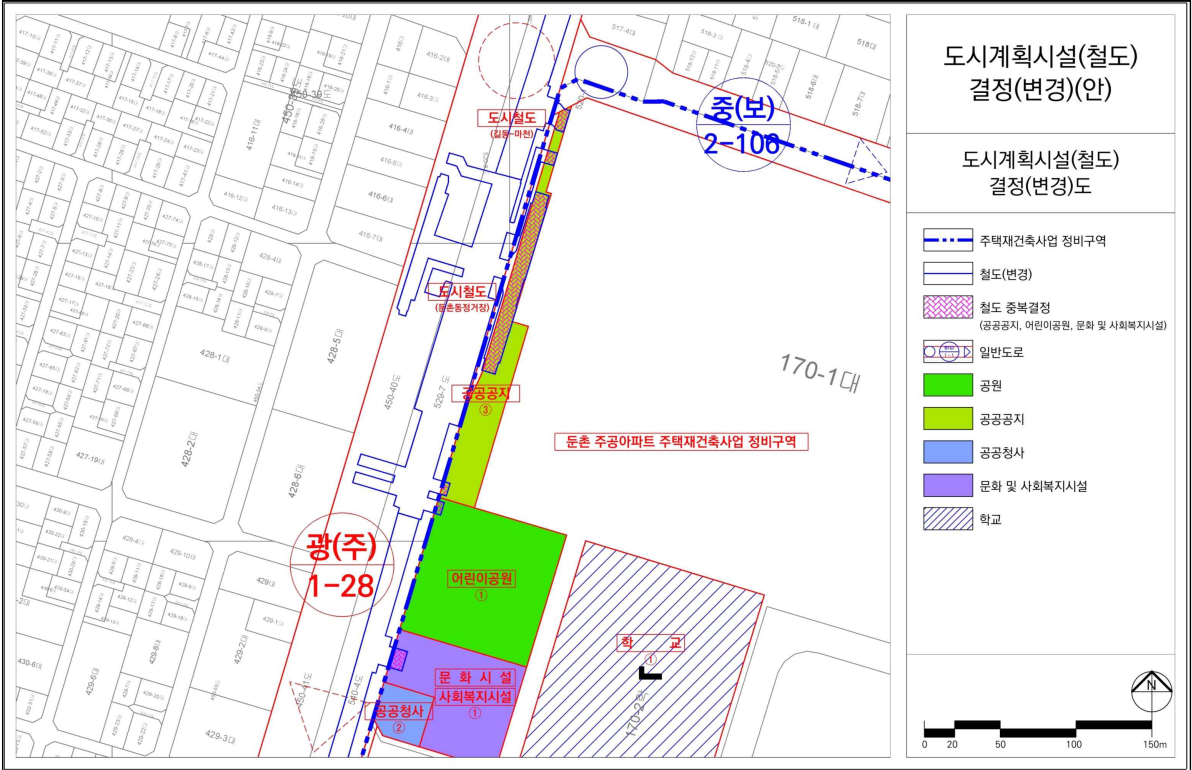
- '06.11. 2. :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(서울특별시고시 제372호)
- '14.10.14. : 제14차 市 건축·교통 통합위원회심의 완료
  - ※ 양재대로에서 풍성로 한산중학교 방면의 우회전 구간에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
- '15. 1.22. :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23호)
  - ※ 양재대로 일부 확장(기존: 폭원 50m → 변경: 폭원 50m~53m)
- '15. 8. 5. :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(강동구고시 제93호)
- '17. 5. 2. :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(강동구고시 제68호)
- '18. 9.18. : 제21차 市 교통영향평가(변경심의) 완료
  - ※ 자전거도로 설치 신설 및 지하철 출입구, 환기구 이설 계획 반영
- '19.12. 3. : 착공신고

(붙임1) 주민(재)열람 및 관계부서(기관) 협의의견 1부

# □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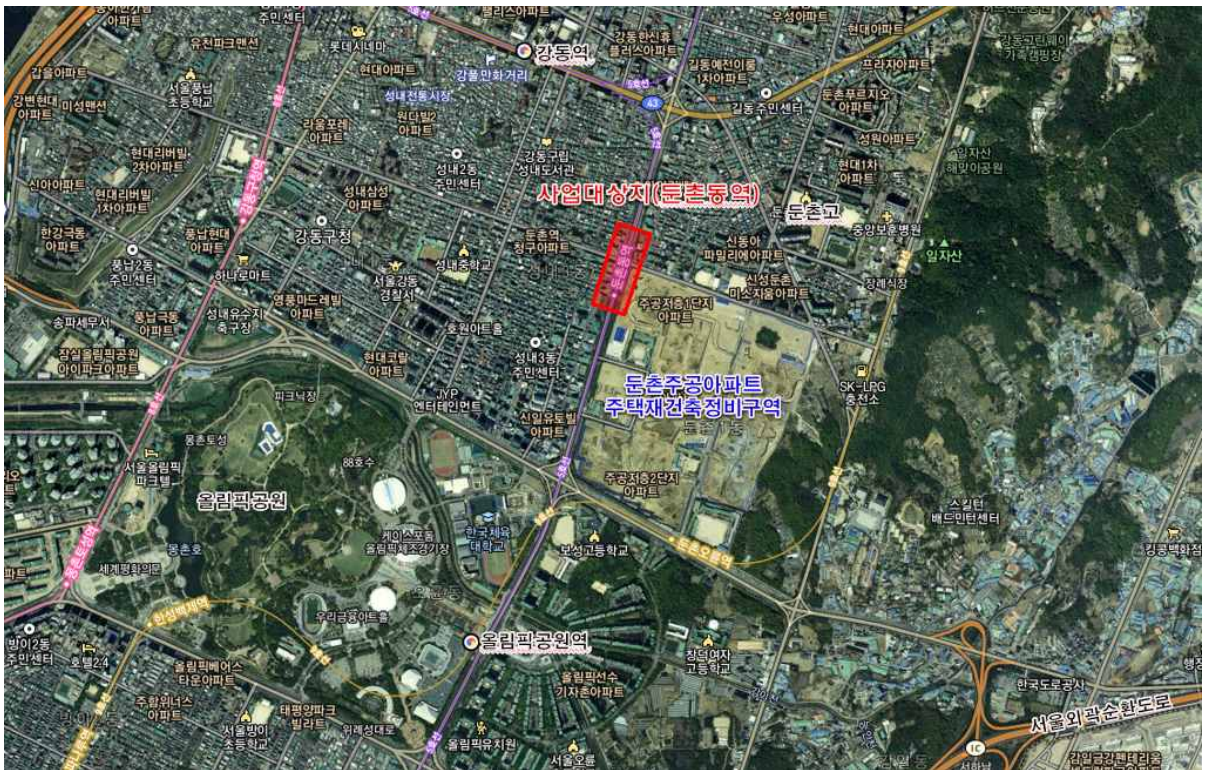
# □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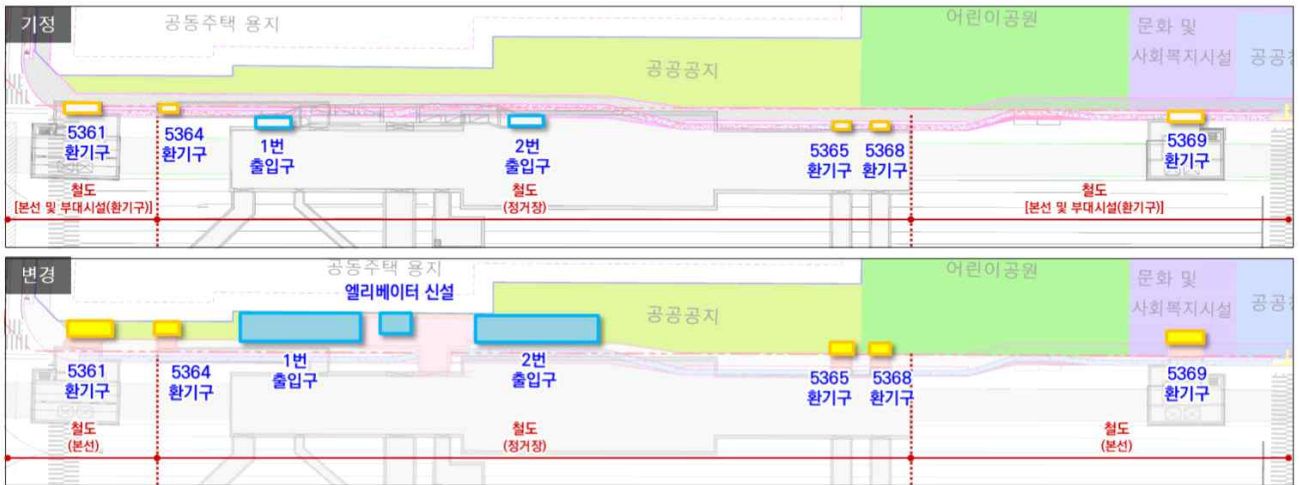


## 10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철도)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(5호선 둔촌동역)은 강동구 둔촌동역에 대하여,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설하는 사안으로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
- 둔촌동역 일대는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가운데, 지하철역 동측에 연접한 둔촌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(붙임2)이 진행 중으로 '19년 12월 착공하여 '25년 1월 준공할 예정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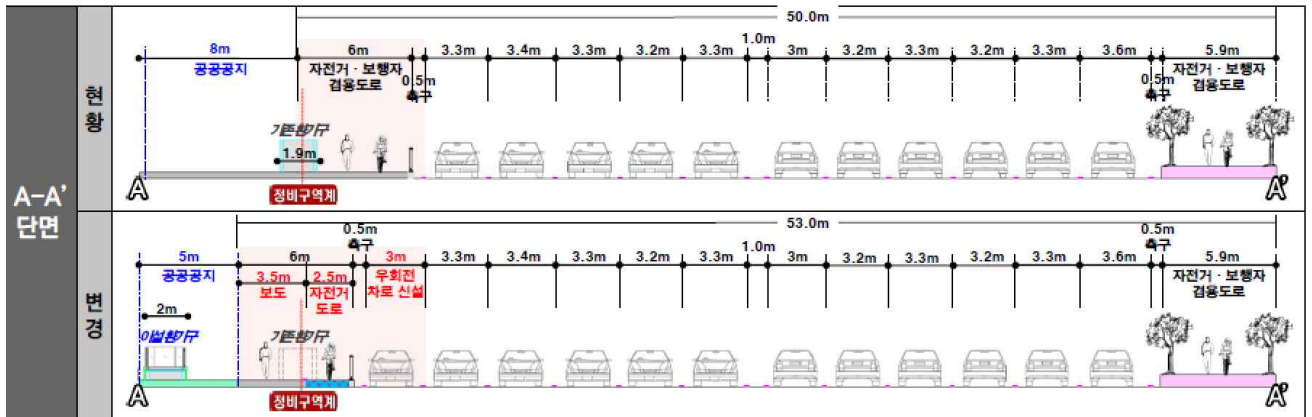
- 정비계획에 따르면 둔촌동역이 위치한 양재대도가 확장될 예정으로(기정: 50m → 변경: 53m), 이번 의견청취안은 기존 보도에 설치된 지하철역 출입구(1번, 2번)와 환기구(5개소)를 정비구역 내로 이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안임



5361 환기구  
 → 본선 내 포함하여 관리  
 → 부대시설 폐지

5364, 5365, 5368 환기구  
 → 정거장 내 포함하여 관리

5369 환기구  
 → 본선 내 포함하여 관리  
 → 부대시설 폐지



- 좀 더 살펴보면, 기존 보도에 위치한 지하철역 출입구 1번과 2번, 환기구 3개소(5361, 5364, 5365)는 정비구역 내 공공공지로 이설할 계획으로 철도 및 공공공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고,  
 나머지 환기구 2개소(5368, 5369)는 각각 어린이공원과 문화·복지시설로 이설할 계획으로 철도 및 공원, 철도 및 문화·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려는 것임
- 또한, 현재 철도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환기구를 철도 본선으로 편입하고자 해당 환기구 2개소(5361, 5369)의 철도 부대시설 폐지도 포함되어 있음

	이설계획 (도시계획시설 변경)	관련 도면	비 고
1번 출입구	도로 → 공공공지 (철도 및 공공공지 중복결정)		E/V 신설
2번 출입구	도로 → 공공공지 (철도 및 공공공지 중복결정)		
환기구 5361	도로 → 공공공지 (철도 및 공공공지 중복결정, 철도 부대시설 폐지)		본선편입
환기구 5364	도로 → 공공공지 (철도 및 공공공지 중복결정)		



환기구 5365	도로 → 공공공지 (철도 및 공공공지 중복결정)		
환기구 5368	도로 → 어린이공원 (철도 및 공원 중복결정)		
환기구 5369	도로 → 문화 및 복지시설 (철도 및 문화·복지시 설 중복결정, 철도 부대시설 폐지)		본선편입

- 둔촌동역 도시계획시설은 이번에 변경 결정되면 올해 6월에 착공하여 '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, 사업비는 156억 50백만 원으로 전액 정비사업 조합에서 부담할 계획임
- 이번 도시계획시설(철도) 변경은 도로 확장(기부채납)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이설하는 내용으로서,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고, 향후 보행 편의 및 지하철 이용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지하철 환기구가 이설되는 공공공지, 공원,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에 환경 및 경관 측면에서 환기구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폐 식재, 차폐 구조물 설치 등 계획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

<붙임1> 주민(재)열람 및 관계부서(기관) 협의의견 (자료: 시설계획과)

1.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

○ 강동구 푸른도시과 보완사항 조치계획(22.07.21.)

구 분	자 문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푸른 도시과	○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(제1호 어린이공원) 내 철도 중복 결정 사항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계획시설(공원) 조성계획결정(최초)에 반영되어 고시된 사항으로 중복결정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 없음	-	-
	○ 공원이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환기구 설치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므로 환기구를 성토·덩굴류 차폐식재·돌출부위의 환경조각화 등 부정적인 시각 요소를 완화시키는 기법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(안)에 대한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여야 함	○ 환기구가 설치되는 위치가 공원 등에 위치되므로 주변 경관과 위해 되지 않도록 푸른도시과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하겠음	반영

○ 서울시 시설계획과 보완사항 조치계획(22.07.29.)

구 분	자 문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시설 계획과	○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조서 작성 관련 최초 결정일 수정 - 본선(길동~마천), 둔촌동정거장 : 건설부 고시 제151호(91.4.1.) - 환기구(2개소):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26호 (93.7.31.)	○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조서에서 최초 결정일을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음	반영
	○ 변경결정 사유서의 변경 내용(면적 증감 사항) 수정 - 본 선: 폐지되는 환기구(2개소)의 기정 조서 면적을 그대로 본선 면적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되는 환기구의 실제 증가 면적으로 작성 - 정거장: 증가면적 255㎡는 1번, 2번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외 기존 정거장의 현황 측량성과 결과도 반영된 사항 이므로 증감 면적을 세분하여 작성	○ 본선에 편입되는 환기구(2개소)의 면적은 실제 증가 면적(cad구적)으로 조정 ○ 정거장의 변경결정 사유서에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과 환기구 및 출입구 이설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을 세분화 하여 명시하였음	반영

○ 서울교통공사 보완사항 조치계획-1차(22.07.28.)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토목	○ #5361 환기구 이설계획 평면도에 의하면 수평 풍도가 꺾여진 형태로 계획되어 있는바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	○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계획 시 모든 구조물 이설 구간은 공공공지 부지 내로 이설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. ○ #5361 환기구를 직선화할 경우 공공공지 부지 외로 배치가 불가피하며,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노상시설의 금지 지역 규정에 어긋남. ○ 또한, 이설 환기구 계획에 대한 정압 검토 결과 풍도 유지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, 실시계획인가시 풍량 및 정압 상태 확인을 위한 기술검토서 제출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	미반영
	○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(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, '20.12.31.)」에 따라 도시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은 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0.5m (보호폭)씩 추가 확보하여 결정되어야 함	○ 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0.5m(보호폭)를 추가 확보한 면적을 재산정하여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변경) 하겠음	반영
	○ 도시철도 구조물과 건축물 간 계획된 연결통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 ※ 동 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간 설치토록 계획된 연결통로는 건물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'전용통로'로써 "서울특별시 행정 2부시장 방침 제232호('18.10.25.) 「지하 연결 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」"에 의거 '철도' 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함	○ 도시철도 구조물과 건축물 간 발생하는 [도시계획시설(철도)~대지경계] 연결 통로에 대해서는 강동구청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등의 절차를 협의 및 진행토록 하겠음	반영
	○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첨두시간대 수요예측 및 서비스 수준(혼잡도) 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성,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결통로 및 출입구 통로의 위치, 규모, 동선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	○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의 '2.2.3 서비스 수준'에 근거하여 첨두시간대 수요예측을 반영한 서비스 수준검토서를 작성하였음.	반영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건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승강시설 설치의 적정 규모 검토를 위한 서비스 수준 분석 보고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번, 2번 출입구 내 설치되는 승강시설(E/S, E/L, 계단)의 적정규모 검토를 위하여 향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서비스수준 분석 보고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→ 관련근거: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 2.2.3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의 '2.2.3 서비스 수준'에 근거하여 첨두시간대 수요예측을 반영한 서비스수준 검토서를 작성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승강시설 및 연결통로 간 최소 여유 공간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번, 2번 출입구 내 승강시설(E/S, E/L)와 연결통로 간 최소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향후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지상 엘리베이터 부근 혼잡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→ 관련근거: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 3.3.3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의 '제3장 정거장 내 시설'에 근거하여 구조물을 계획하였으며, 첨두시간대 수요예측을 반영한 서비스수준검토서에 관련기준 및 대기공간 서비스 분석 검토 내용을 수록하였음</li> <li>○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지상 구간은 공공공지이며 폭 7.5m로 계획되어 있어 혼잡 발생 우려 없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타 출입구 및 승강시설 등 설치 관련 법적 충족 여부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입구 및 승강시설 등 설치 관련한 법적 충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, 실시계획 인가 시 설계 성과물에 반영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</li> </ul>	반영
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 2.1.3 친환경성 (1) 실내온도, 습도 등에 대하여 적절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한다.」에 따른 개량 또는 신설 기계시설물에 대한 설계 검토 및 반영 요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철도시설물의 기계시설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의 '2.1.3 친환경성'에 근거하여 신설 기계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검토한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입구 이설에 따른 통로 등 변경된 구역에 환기 장비 설치 검토 요함. (기존 대합실 환기설비 용량 증설 활용 또는 신설 환기 장비 설치에 따른 용량, 배치공간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출입구 환기설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된 구역에 대한 환기설비 용량증설활용 및 신설 환기 장비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절기 한파에 따른 동파 방지 설비 적용 필요성 검토 및 설치 요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시계획 인가 시 동파 방지 설비(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 열선 반영 등) 필요성 검토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기구 이설에 따른 공사기간 내 역사 환기설비 운영 및 화재 시 제연(연기 배출) 동작 등 필수 기능 유지 방안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시계획 인가 시 환기구 이설공사 기간 환기 기능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 계획도를(신설구조물 선시공 후 기존 구조물 철거, 환기설비 연결은 영업 종료 후 시행) 작성하겠으며, 시공 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</li> </ul>	반영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기계	○ 환기구 이설에 따른 공사기간 내 예비환기구 확보	○ 실시계획 인가 시 환기구 이설공사 기간 환기기능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도를(신설구조물 선시공 후 기존구조물 철거, 환기설비 연결은 영업종료 후 시행) 작성하겠으며, 시공 전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	반영
	○ 공사 시 분진 발생에 따른 기계시설물 오염방지 및 역사 내 분진 유입 방지 방안 필요	○ 기계시설물 오염방지 및 역사 내 분진 유입 방지를 위해 공사 전 칸막이를 설치하겠으며, 필요 시 공기청정기 등을 추가 설치하겠음	반영
	○ 관련 법규(화재안전 기준 등)에 적합한 소방시설물 설치 • 자연 설비 적용 사전 협의 (소방서 등 관련기관) 필수	○ 실시계획 인가 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	반영
	○ 신설 출입구측에서 역사로의 우수 유입에 따른 우수처리 방안으로 자연배수 방식 적용	○ 신설 출입구 상부에 케노피를 설치하여 역사로의 우수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유입되는 우수는 자연 배수 방식으로 반영하겠음	반영
	○ 역사 및 본선 신설 환기구 면적을 기존 환기구보다 축소하지 말 것	○ 이설되는 환기구 면적은 기존 환기구 면적 이상을 확보하겠음	반영
	○ 역사 및 본선 환기구 오물방지망 제작 설치 시 사전 협의	○ 실시계획 인가 시 이설되는 역사 및 본선환기구 오물방지망은 「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, 서울특별시」에 근거하여 계획 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	반영
	○ 역사 및 본선 환기구 출입용 원형사다리 설치	○ 실시계획 인가 시 본선 환기구 출입용 사다리는 원형사다리를 적용하겠음	반영
	○ 역사 및 본선 환기구 이설 시 환기구 풍도 길이 연장 및 굴곡개소 추가 등으로 인해 공기저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기존 송풍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적정 풍량 및 정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AB 기술검토서 제출	○ 실시계획 인가 시 환기구 풍도 길이 연장 및 굴곡개소 추가 등으로 인한 마찰손실을 검토하여 기존 송풍기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겠음	반영
	○ 승강기 제작 설치 시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제작 설치	○ 승강기 제작·설치 시 공사 시방서에 의거 제작·설치하겠으며, 제작 전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	반영



○ 서울교통공사 보완사항 조치계획-2차(22.09.20.)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토목	○ #1번 출입구는 현재 재건축사업과 상관없는 둔촌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#1번, #2번 출입구 동시 폐쇄 시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 필요. (시공순서 검토, 이설 위치 조정 등)	○ 기존 출입구 동시 폐쇄 대안으로 연결 통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설 통로 폭을 기존 통로 폭에 이격하여 이설 #1, #2 출입구를 선시공한 후 기존#1 출입구 철거하는 방안으로 둔촌2동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하겠음	반영
	○ 도시철도 구조물과 건축물 간 계획된 연결통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에 대해 보완 제출 필요(향후 연결통로 협약 체결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체와 협의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요망)	○ 서울시 및 강동구 협의 결과 도시계획 시설 철도와 사유건물 간 계획된 연결통로는 「자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(2018.10.)」에 따라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며, 추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진행토록 하겠음	반영
	○ 도시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폭은 도시철도 구조물로부터 0.5m(보호폭)씩 추가 확보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면적 증가내용을 조서에 포함하여 제출 바람	○ 도시철도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조물로부터 0.5m(보호폭)를 이격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선형을 계획함	반영
	○ '22.08.01. 실시한 둔촌동역 출입구 보행량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모든 출입구(#1~#4)의 공사 전 및 공사 중 서비스 수준을 "A"로 분석하였으나, 동 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 주민의 이주시기가 '17.7월~'18.1월임을 고려할 때 "공사 전 서비스 분석"은 이주 시작 전 보행량을 반영하여 재 분석 필요함	○ 아파트 이주 전 보행량 분석을 위해 서울 교통공사 연도별 승·하차 실적 5년간 (2012년~ 2016년) 자료를 조사한 결과, 2013년에 가장 많은 승·하차 실적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이주 시작 전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#1번, #2번 출입구 모두 "B"로 검토되었음. #3번, #4번 출입구는 현재상태와 동일한 조건이므로 22년 8월 1일 실시한 보행량 조사결과를 반영한 "A"로 분석됨	반영
	○ 공사 완료 후 서비스 수준 분석 시 "2021년 둔촌동역 승·하차인원"을 적용한 시간대별 승·하차 발생비율을 산정하여 각 출입구별 이용인구를 예측하였으나, 분석결과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의 이주 시작 전 ('17.7월 이전) 둔촌동역 승·하차 인원을 반영하여 공사 후 출입구별 장래 이용인구를 예측·분석이 필요함	○ 아파트 주민 이주 시작 전 둔촌동역 승·하차 인원을 반영하고 향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순수 증가된 이용인구를 예측하여 서비스 수준을 분석을 시행한 결과, 현재 검토된 보행량보다 적은 것으로 검토됨	반영

구 분	자 문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토목	○ 1번 및 2번 출입구와 대합실 간 통로의 공사후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가 “D”로써 「도시철도 정거장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에 따른 기준(“D” 이상)에는 부합하나, 동 재건축사업으로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(약 6천 세대→12천 세대)됨에 따라 철두시간대 혼잡도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통로 폭(7m)을 확장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	○ 기존 통로 폭 검토 시 이용 가능한 1번, 2번 출입구 및 상가 연결통로에서 유입되는 각 최대치 합산인원을 가장 불리하게 적용된 결과이며, 「도시철도 정거장 환승·편의시설 설계지침」에서 6m이상,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폭을 충족하므로 기존 통로 폭(7m)을 유지하겠으며 혼잡도 완화를 위해 통로 폭 위치를 변경하겠음	반영
건축	○ 연결통로 합류구간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혼잡시간 대 출입구,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의 이용객으로 인한 역사 내 혼잡이 예상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	○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연결통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통로 폭은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폭을 충족하는 순폭(7m)을 적용하겠음.	반영
	○ 기타 건축분야 세부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, 평면도, 단면도, 상세도면 등 관련 도면 제출 시 검토 가능	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, 기타 건축분야 세부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겠음	반영
정보통신	○ 연결통로 설치구간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토록 교통공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송장치 스피커는 물론 건물 방재실과 교통공사가 연결통로 상시 감시가 가능토록 감시카메라 구축 필요	○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에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비상 방송 및 감시카메라 등을 성과품에 반영하겠음	반영

○ 서울교통공사 보완사항 조치계획-3차(22.10.05.)

구 분	자 문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서울 교통 공사	○ 동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주관하에 설계, 공사(감리 등 건설사업 관리)를 시행하여야 하며,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설계 및 공사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	○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주관하에 설계 및 공사(감리 등 건설사업 관리)를 시행하겠으며,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설계 및 공사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하겠음	반영
	○ 동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공사와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전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공사 관련 서류(지하철 구조물 안전성 평가보고서, 구조물 설계도서,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서, 지반 조사	○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 전, 공사 관련서류(지하철 구조물 안전성 평가보고서, 구조물 설계도서,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서, 지반조사 보고서, 철도보호	반영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	보고서,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서)가 제출되어 협의의 거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함	지구행위신고서) 제출 및 협의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	
	○ 동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 주관 으로 시설물 규모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, 향후 재건축 완료 후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서비스 수준 분석오류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규모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	○ 향후 재건축 완료 후 입주민들의 민원이나 서비스 수준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규모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변경하겠음	반영
	○ 아울러, 동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시, 기 회신드린 붙임2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세부도면이 우리공사에 제출되어 협의(협약체결 포함) 후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	○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시, 기 수신한 검토 의견 (1차: 토목차-5399(22.07.28), 2차: 토목차-6583(22.09.20))이 반영된 세부도면을 서울교통공사에 제출 후 승인을 득하겠음	반영

## 2. 주민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

### ○ 서울시 보완사항 조치계획 (22.10.20.)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상업 기획과	○ 지정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, 2,385.7㎡) 중 금회 도시계획시설(철도) 중복결정(6개소: 지상 269㎡, 지하 632㎡)은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9조·제61조 상 공공공지의 '정의' 및 '구조 및 설치기준' 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고, 결정조서 상 지하 조성깊이 등 구체적인 중복결정 범위 명시 필요	○ 이설되는 출입구와 환기구는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하여 주변 경관에 위해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공지에 조성되는 보행로에서 지하철 출입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○ 공공공지 내 환기구3개소(본선 및 정거장 위치)와 출입구2개소(정거장 위치)가 이설되며 합산한 면적은 788㎡임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의 경우 철도(본선) 및 철도(정거장)로 구분되어 작성되며 이에따른 환기구와 출입구 별도의 구체적인 폭원과 높이 등이 상세히 작성된 사업계획(안)을 첨부하여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음	반영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수변감성 도시과	〈유출지하수〉		
	○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「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」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	○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· 수자원법 9조의2 ①항 1호: 지하철·터널 등을 설치하려는 자 · 수자원법 시행규칙 15조 ②항 1호: 지하철역사 1개소 : 1일 300톤	반영
	○ 사업시행 시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 따라 지하철·터널 등의 지하시설물(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)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m <sup>3</sup> 이상(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m <sup>3</sup> 이상)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,	○ 본 도시계획시설(철도)결정(변경) 사업은 지하철·터널 설치가 아닌 기존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는 과업으로서 정거장이나 터널구간처럼 지하수가 집수되어 유출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	
	○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m <sup>3</sup> 이상(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m <sup>3</sup> 이상)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	○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해 공사 중 가시설 설치 시 차수 그라우팅을 설치하여 지하수 유입을 1차 방지하고 유량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유출량을 확인하겠으며, 구조물 공사 시에는 줄눈실링 공법(신축줄눈) 및 슈트방수 공법을 적용하여 본 구조물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지하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음	
	○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,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		
	○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		
	○ 지하수위는 「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」을 준수하여 관리	○ 지하수위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관측 및 관리를 시행하고 공사후에도 일정기간 지속 관측하도록 향후 도면에 명기하여 「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」을 준수하겠음	반영
	○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(지반침하 포함),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(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)	○ 지하수위계(지표침하계)를 설치하여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하겠음	반영
○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토록 협의	○ 지하수 관측공은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	반영	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수변감성 도시과	<p>〈토양〉</p> <p>○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,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(석유류 제조·저장시설, 유해화학물질 제조·저장시설,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)</li> <li>·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)</li> <li>· 국방·군사시설(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)</li> <li>· 기타(난방유 저장탱크 등)</li> </ul>	<p>○ 본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둔촌동역과 둔촌재개발건축현장 사이에 존재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</p>	반영
	<p>○ 사업시행(공사)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,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</p>	<p>○ 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겠음</p>	반영
	<p>〈물재이용〉</p> <p>○ 사업 시행 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</p>	<p>○ 본 도시계획시설(철도)결정(변경) 사업은 기존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는 과업으로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물재이용법”) 제8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·관리) ①항의 빗물이용시설 설치·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.</p>	반영
	<p>○ 사업 시행 시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</p>	<p>○ 또한, 물재이용법 제9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 ①항 및 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중수도의 설치·관리) ①항에 해당하지 않음</p>	반영
	<p>〈저영향개발(LID)〉</p> <p>○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성 검토서에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부 『환경영향평가서 저영향개발(LID) 기법 적용 매뉴얼』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, 규모, 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강우유출모델 수행 등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 제시</li> <li>·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,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지류시설, 빗물이용시설, 침투트렌치, 침투측구, 침투통,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</li> </ul>	<p>○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(침투트렌치, 침투측구, 식생대, 식생여과대, 투수포장 등)을 검토하겠음</p>	반영



구 분	자 문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수변감성 도시과	<p>〈 저영향개발(LID) 〉</p> <p>○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 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(☎2133-3779)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(재개발)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</li> <li>※ 민간시설의 대규모 : 대지면적 500㎡ 이상, 소규모 : 대지면적 500㎡ 미만</li> <li>· 화단, 가로수보호대,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(지표면보다 낮게 설치)</li> </ul>	<p>○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검토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하겠음</p>	반영
	<p>○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,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「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」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, [물순환정책과-7418 ('20.04.20.)호]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개발사업의 인·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(☎2133-3779)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 유입되도록 설계되어야 함</li> <li>· 서울시 홈페이지 ⇒ 분야별정보 ⇒ 환경 ⇒ 자료실 ⇒ 물관리 ⇒ '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' 참조</li> <li>· 대지면적 1만㎡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(부서) 협의 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(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)</li> <li>·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(인·허가) 및 설치결과(사용승인)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</li> </ul>	<p>○ 본 사업은 기존 둔촌동역 출입구 2개소 및 환기구 5개소를 이설하는 과업으로서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 제8조(저영향개발 사전협의) 및 수질오염총량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연계를 통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계획, [물순환정책과-7418 ('20.04.20.)호]의 녹색인프라 의무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</p>	반영

구 분	자 문 의 건	조 치 계 획	비 고
생활환경과	(소음·진동)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변 지역 소음·진동 현황조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사 및 운영 시 소음·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조사</li> <li>· 소음에 민감한 학교·주거시설·병원 등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시설, 진동피해가 우려되는 시설, 그 밖에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및 주거시설이 공사장에서 약 200m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해 도면에 반영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(공정)별 및 발파에 의한 소음·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사 시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전체 공정에 대하여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 예측</li> <li>· 공정별 공사물량(산출근거), 해당 공정의 소요 일수, 투입장비 및 소요대수(산출근거), 해당 장비의 동력, 장비별 소음도(인용자료), 합성 소음도, 이격거리별 소음도(산출식) 등 고려</li> <li>· 저감대책에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(소음 측정기, 전광판) 설치 포함 (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상 설치 지원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링조사 결과 본 사업구간은 굴착 최하면은 풍화토로 구성되어 발파에 의한 소음·진동은 없으나, 가시설 공사 시에는 매입공법을 철거 시에는 다이아몬드 휠쏘 공법을 적용하여 주변 지역 소음·진동을 최소화하겠으며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(소음 측정기, 전광판) 설치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원(교통,철도, 공항소음 등)의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운영 시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소음·진동의 조사 및 평가</li> <li>· 발생 소음원 종류(교통, 철도, 항공소음 등) 및 소음도 현황 조사</li> <li>⇒ 자치구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교통소음지도 적극 활용</li> <li>· 주변 소음발생원에 따른 사업지구 층별 소음도 예측</li> <li>· 지하철 소음진동 예측 및 저감대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환경영향평가서(2015)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실시계획 인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파공정이 있을 경우, 발파에 따른 소음·진동 피해 가능성 검토 및 대책 수립(공사내용 미확정시 차후 대책수립 요망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발파 시 사업지구 경계선 상에서 발파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지점에서의 진동속도 측정 등 소음·진동 영향 예측</li> <li>· 정온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무진동 발파 공법 등 적용가능 공법 제시</li> <li>· 정온시설의 특성에 따라 진동속도 기준 검토</li> <li>· 현황 파악 결과에 따라 동 지역에 적합한 허용기준 설정 및 공사방법, 저감대책 수립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링조사 결과 본 사업구간은 굴착 최하면이 풍화토로 구성되어 발파공정은 발생하지 않음</li> </ul>	반영

<붙임2>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현황 (자료: 시설계획과)

사업명	둔촌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	
대지위치	서울시 강동구 둔촌1동 170-1번지 일대	
대지면적	사업구역면적	626,232.5㎡
	대지면적	462,771.4㎡
	기부채납면적	78,992.4㎡
	존치용지	84,468.7㎡
용도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	
건축용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	
건축면적	85,128.5㎡	
건폐율	18.4%	
용적률	273.9%	
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
규모	지하 3층, 지상 35층	
세대수	기존 5,930세대 → 12,032세대 (85개동)	
주차대수	17,893대	

